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1. 23 선고 2021가단13287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연천군

소송대리인 A,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23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20. 12. 7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소외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21. 1. 22. 접수 제1139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 유상호

별지